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74 발의연월일: 2025. 1. 21.

발 의 자: 박홍근・이수진・민병덕

박상혁 • 이병진 • 진성준

한민수 · 이용우 · 정을호

남인순 · 한정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·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·키·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,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임신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 구하지 않도록 규정하지 않아 임신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·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 신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·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 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 등).

법률 제 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체중 등의"를 "체중·임신여부 등의"로 한다. 제37조제4항제1호 중 "체중 등의"를 "체중·임신여부 등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모집과 채용) ① (생 략)	제7조(모집과 채용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	②
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	
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・키	
· <u>체중 등의</u> 신체적 조건, 미혼	- <u>체중·임신여부 등의</u>
조건,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	
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	
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	
	,
제37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	제37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	4
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	
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	
의 벌금에 처한다.	
1.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	1
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	
별하거나, 여성근로자를 모집	
·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	
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・키	
· <u>체중 등의</u> 신체적 조건, 미	- <u>체중·임신여부 등의</u>
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	

구한 경우	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